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의 상향 입법,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3.)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중복 규정은 폐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시 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안 제30조의8제3항 폐지)

나.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및 조치 이행 확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30조의8 제3항·제4항 신설)

다.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1 제2호 차목·카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5. ~ 5. 16.) 진행

3) 행정규제 : 비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자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	350	700	1,000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자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	35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손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641